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특례시에 대한 지원 특례 마련〉

■ 김성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06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개 요	4
가. 특례시 의의 및 현황	4
나. 특례시에 대한 특례	6
다.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0
라.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	11
2. 주요내용별 검토의견	16
가. 제명 및 목적(제명 및 안 제1조)	16
나. 정의, 국가 및 도의 책무, 특례시의 책무(안 2조, 제3조 및 제4조)	17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5조)	22
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및 제7조)	23
마.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등(안 제8조 및 제9조)	25
바. 사무특례(안 제10조)	29
사. 특례시에 대한 개별 특례규정 신설(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38
(1)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안 제12조)	38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안 제13조)	39
(3) 특례부여 및 지원(안 제14조)	42
[참고1]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4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43
[참고2]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3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44
[참고3] 제정안 제10조(사무특례)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	4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회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4.
3. 회부연월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2. 1. 13. 시행)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의 개별법에서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은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도에 특례시의 지방자치 보장,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특례시는 국가와 소속 도의 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특례시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마.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함. (안 제10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례시와 도,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가가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특례시에 이양·위임되는 사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특례시장장이 소속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례시에 대한 특례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Ⅲ. 검토의견

1. 개 요

가. 특례시 의의 및 현황

특례시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부여된 명칭으로, 2021. 1. 12. 전부개정되어 2022. 1. 12.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도입되었음. 종전¹⁾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특례부여와 관련된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전부개정과 함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관한 규정이 새로 도입된 것임.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²⁾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지위는 일반 ‘시’와 동일하며 ‘특례시’ 자체는 행정상 명칭에 해당함.

그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는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의 행정수요가 있으나, 일반 시의 지위에 머물러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³⁾.

1)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3)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1914호, 2022. 1. 4.

개선책 중 하나로 인구 100만 이상의 시를 광역시⁴⁾로 승격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대도시가 ‘도’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도 및 도 내 다른 시·군과의 갈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었음⁵⁾.

이에 절충안으로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법적인 지위는 일반시를 유지하되,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재정·사무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된 것임.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하려면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인구, 외국국적동포, 등록외국인 수의 합계로 산정함.

다만, 특례시로 지정된 경우에도 인구감소로 인해 분기별 산술평균한 평균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에 미달할 경우 다음 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됨.⁶⁾

4) 광역시 승격·신설에 관하여는 법률에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서 면적·지리적 여건·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2023 행정구역 실무편람, 행정안전부)

5) 특례시의 법령상의 특례와 사무이양에 관한 연구, 최철호,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70호 제21권제12호 2021. 6.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① 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시에는 경기도 수원시·용인시·고양시 및 경상남도 창원시가 있음.

<특례시 현황>

(단위: 명, km²)

연번	도시명	주민 수	면적
1	경기도 수원시	1,249,349	121.09
2	경기도 용인시	1,100,376	591.23
3	경기도 고양시	1,095,084	268.11
4	경상남도 창원시	1,038,830	749.03

* 경기도 화성시는 2023. 12. 31. 기준으로 주민 수 100만을 초과하였으나, 2024. 12. 31.까지 이를 유지해야만 2025. 1. 1.부터 특례시로 지정됨.

나. 특례시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법」은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시에 행정, 재정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추가적인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⁷⁾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부터 제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 ②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인구의 감소로 전년도 각 분기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시는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된다.
- ③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인구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구 50만”은 “인구 100만”으로 본다.

7)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61조까지는 특례시에 대한 사무·행정·재정상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례시는 도의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거나 2명의 부시장을 둘 수 있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시세로 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또한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종 사무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특례의 종류는 [참고]에 별도로 기재함.

<특례시의 특례 관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규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9조(특례시의 사무 특례)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5.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6.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5항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9.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2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 같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보고 등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징수 업무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로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로 한정한다]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업무
 1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업무
- 제60조(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

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으로 하고,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68조·제102조 및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과 별도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사무이양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례시의 경우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시세로 한다.

다.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본칙 15개 조문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정 사항
본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도의 책무
	제4조	특례시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	특례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제10조	사무특례
	제11조	영향평가
	제12조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
	제13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제14조	특례부여 및 지원
	제15조	권한의 위임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6조 및 제7조),

②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목적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안 제8조 및 제9조),

③ 특례시에 대한 사무특례를 마련하고(안 제10조),

④ 그 밖에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에 관한 특례 등 개별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또한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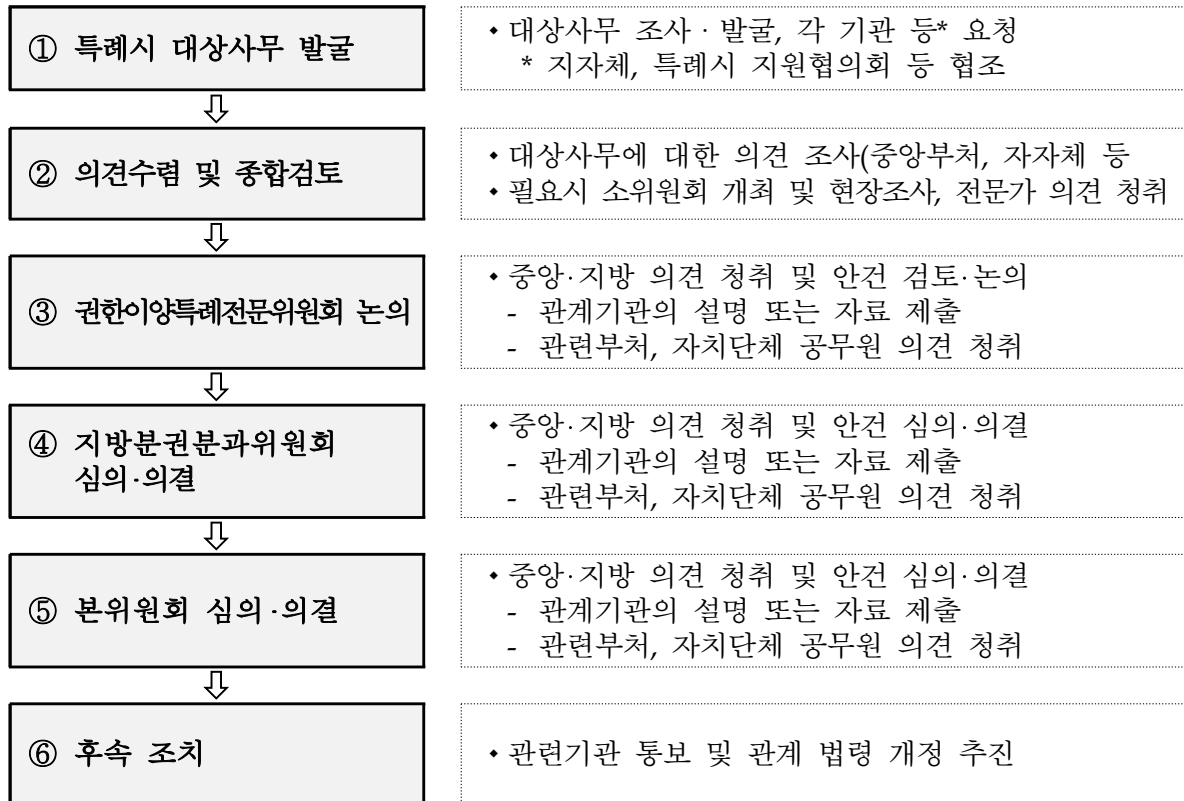
라.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현재 특례시 명칭 부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무·행정·재정상 특례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산재 및 중복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특례시가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개별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례시에 인정되는 특례를 발굴하고 이행방안을 마련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⁸⁾, 이러한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 심의, 법령개정 절차 등으로 인해 특례부여가 지연될 수 있음⁹⁾.

<지방시대위원회 특례 발굴 및 이행 절차>



이에 제정안은 개별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특례시에 대한 각종 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특례부여 요청 절차 및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9)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 현승현(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2023.2.)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①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특례시 지원 체계와의 정합성, ② 특례시의 특수성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③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부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기존의 특례시 지원체계와의 정합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¹⁰⁾은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에 대한 각종 특례를 발굴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특례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에 대한 특례부여를 위한 주요 과제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현행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둘째, 특례시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현재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특례 및 각종 지원을 부여받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각각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도시계획적 특성 및 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¹¹⁾하여 특례 및 지원을 부여받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 등 특수한 목적¹²⁾에 따라 특례 및 지원을 부여받고 있는 것임.

특례시의 경우에도,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특례시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특례부여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11) 「지방자치법」

제197조(특례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1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시·도의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추가되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부대의견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 권한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정안의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중복의 우려가 있고, 사무특례 신설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 설치 등은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가. 제명 및 목적(제명 및 안 제1조)

제 정 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제명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목적을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과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례시는 일반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인구·도시 규모 등 양적인 수준이 큰 ‘대도시’에 해당하고,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를 제외한 세 곳의 특례시(고양·수원·용인)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제명에 특례시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통해 지역거점을 육성·강화할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이미 인구가 많고 대도시에 해당하는 특례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다른 도시들과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또한 제정안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사무 처리의 자치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 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여 적절히 수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이고, 해당 법률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임.¹³⁾

나. 정의, 국가 및 도의 책무, 특례시의 책무(안 2조, 제3조 및 제4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례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를 말한다. 2. “도”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서 특례시를 관할 구역으로 두는 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도의 책무) ① 국가는 특례시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13)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도는 특례시 및 인근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례시의 책무) ① 특례시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와 도의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특례시는 도 및 인근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특례시는 도의 지위 및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2조는 “특례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로 정의하고, “도”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써 특례시를 관할 구역으로 두는 도’로 정의하고 있음.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 법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용어, 사용빈도가 높은 용어 및 일반적인 쓰임새와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 등의 뜻을 명확하게 하여 법률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분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함¹⁴⁾.

14)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법제실, 2024, p.244

제정안은 이 법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례시”를 정의하고 있고, ‘특례시를 관할구역으로 가지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호의 도’만을 “도”로 정의하여 일반적인 쓰임새와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다고 보임.

다만,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는 취지의 법률안¹⁵⁾ 및 특례시의 인구수 기준을 완화하려는 취지의 법률안¹⁶⁾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도¹⁷⁾의 관할 구역 내에도 특례시가 인정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23년 기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 등 현황>

수도권				비수도권			
연번	도시명	인구 (명)	면적 (km ²)	연번	도시명	인구 (명)	면적 (km ²)
1	경기도 수원시	1,258,922	121.09	1	경상남도 창원시	1,028,884	749.03
2	경기도 용인시	1,102,903	591.23	2	충청북도 청주시	876,127	941.00
3	경기도 고양시	1,094,979	268.11	3	충청남도 천안시	690,029	636.15
4	경기도 화성시	1,003,453	699.41	4	전라북도 전주시	653,841	206.02
5	경기도 성남시	947,724	141.63	5	경상남도 김해시	560,345	463.52
6	경기도 부천시	827,378	53.45	6	경상북도 포항시	500,913	1,130.57

15)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12호),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99호),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55호),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09호)

16)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80호)

17)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7	경기도 남양주시	743,175	458.14	7	경상북도 구미시	412,367	615.35
8	경기도 안산시	725,303	156.41	8	충청남도 아산시	380,969	542.80
9	경기도 평택시	632,785	458.26	9	강원도 원주시	367,258	868.28
10	경기도 시흥시	585,245	139.68	10	경상남도 양산시	363,685	485.60
11	경기도 안양시	556,180	58.48	11	경상남도 진주시	347,420	712.86
12	경기도 김포시	514,950	276.60	* 인구는 '23.12월 말 기준이며, 주민등록 인구 +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 수임.			
13	경기도 파주시	514,411	673.96				
14	경기도 의정부시	471,908	81.54				
15	경기도 광주시	408,130	430.99				
16	경기도 하남시	333,602	87.82				

제정안 제3조 및 제4조는 특례시와 관련한 국가 및 도의 책무와 특례시의 각종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 및 도의 책무 및 특례시의 책무>

구분	책 무
국가	-(제3조제1항) 특례시의 지방자치 보장 및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 입법·행정적 조치 의무
국가 및 도	-(제3조제2항) 특례시의 행·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 -(제3조제3항) 특례시 및 인근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의무
도	-(제3조제4항) 특례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
특례시	-(제4조제1항) 특례시에 대한 국가와 도의 정책수립·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 -(제4조제2항) 도 및 인근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할 의무 -(제4조제3항) 도의 지위 및 권한을 존중할 의무

해당 조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상의 국가의 책무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특례시와 도 간 중층제 구조를 고려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임.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 보장 및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정비 등 입법·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는 국가뿐만 아니라 도의 경우에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를 해당 의무주체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세종시법 및 전북특별법 상 국가 등의 책무>

구분	책무 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북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북도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전북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①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북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5조)

제 정 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특례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례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안 제5조는 제정안에 규정된 특례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지만, 다른 법률에 특례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제정안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제정안의 규정이 우선되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나,

제정안은 특례시의 사무특례와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할 뿐, 특례시의 조직·운영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및 제7조)

제 정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 및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례시 지위 및 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행정·재정적 특례 부여를 위한 주요 과제 및 추진방향
3. 제11조에 따른 영향평가의 실시 계획
4. 제11조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도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
5. 그 밖에 특례시 지위 및 권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 및 특례시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 및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도 및 특례시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특례시 지위 및 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행정·재정적 특례 부여를 위한 주요 과제 및 추진방향
3. 제11조에 따른 영향평가의 실시 계획
4. 제11조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도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
5. 그 밖에 특례시 지위 및 권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특례시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특례시 지원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하는 지방시대종합계획¹⁸⁾에 특례시에 관한 사무이양 등을 포괄하는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법률 및 지원체계와의 중복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마.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등(안 제8조 및 제9조)

제 정 안
제8조(특례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특례시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이

1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③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례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특례시의 행정·재정자주권 제고, 사무처리 지원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도지사, 관계 특례시장으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3.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특례시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의 조치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개별 부처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를 위한 별도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특례시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의 추진력과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신설 필요성과 관련하여, 특례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거나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는 개별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정되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따른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기능중복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

위원회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자살예방정책위원회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u>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u>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u>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u>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새만금위원회	<u>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u>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중앙민방위협의회
국가보훈위원회	<u>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u>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가산학협력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수소경제위원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바. 사무특례(안 제10조)

제 정 안
제10조(사무특례)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5.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6.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5항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9.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2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해양환경

- 경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 같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보고 등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징수 업무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지방관리구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로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로 한정한다]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업무
1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업무
14.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광역소하천정비종합계획 심의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업무
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 30만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
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납자(지방세 채납액이 1천만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청 업무
18. 「의료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의 업무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다른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관한 업무

20.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및 지원(支院) 설치 업무

21. 「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인수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공급 또는 현금 납부 명령 업무

22. 「주택법」 제72조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업무

2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같은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에 따른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같은 법 제33조, 제34조까지에 따른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감면·조정·징수유예·분할납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취소와 배출시설 폐쇄 및 배출시설 조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의 업무

24.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2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합병·상속 등의 신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사업자의 상호·명칭 등 변경 신고 및 폐업신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도·감독,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등록 등의 공고, 같은 법 제72조의2에 따른 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26. 「물류정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지역물류현황조사, 같은 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와 기초자료 제출 요청

과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업무

27.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고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허가·신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8. 「물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29. 「물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업무

30.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 여부 통보와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수리 및 허가기간의 연장과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취소 및 영업 정지명령,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같은 법 제46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 및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업무

3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

3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33.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변경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협의(다만, 대상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특구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라.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변경. 다만,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전용하려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4.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

3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승인취소,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청문 등의 업무

3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변경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수리의 통지

37. 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접수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업무

38.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제2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등에게 행하는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업무

39.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신청

4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

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변경 요청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수립 협의 업무

4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2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

4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 선정. 초광역권산업 선정하는 경우에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및 고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사항 조치,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같은 법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시행 및 재원 부담,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부담금 부과율 조정, 같은 법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6까지에 따른 및 부담금 부과·징수·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11조의7에 따른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구성 및 운영·관리 업무

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1조 및 제53조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운영·구성 등의 업무

4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설치·운영 및 교육훈련 실시

4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추진·지원 및 성과 분석 및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정 신청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중장기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시행 등의 업무

4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제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요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체 요청

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및 지정 해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

4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명령 등 감독 업무

49.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구역의 지방하천 관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협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허가·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인가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관리 업무

50.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에 대한 사방사업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및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같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방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한 토지 출입·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와 이에 따른 손실 보상,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사용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방시설로 인한 수익의 교부 업무

51.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

5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과 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점 부과 및 면허취소 또는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

53. 「농지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른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5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

55.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5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에 관한 의견 제시

57.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특례시의 사무로 규정하는 사항

※ 밑줄 친 사무는 제정안에 따라 특례시에 새로 부여되는 특례임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나열하고 있음. 이 중 제1호, 제3호부터 제13호까지는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59조19)에 따라 특별시의 시장이

1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특별시의 사무 특별) 특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5.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6.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5항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9.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2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 같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보고 등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징수 업무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로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로 한정한다]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업무
1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직접 처리하는 사무에 해당함.

그 이외의 사무는 특례시에 대한 신규 사무특례에 해당하며, 각 호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특례시에 대한 특례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신규 사무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관계 부처의 의견은 [참고3]에 별도로 기재함.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업무

사. 특례시에 대한 개별 특례규정 신설(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당 규정은 각종 특별자치시·도 설치 관련 법률상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참고 입법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특례시의 지정목적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 행정상 특수성 등이 인정되는지와 함께 특별 지원을 통해 특례시를 지역거점으로 육성·강화할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이미 인구가 많고 대도시에 해당하는 특례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다른 도시들과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안 제13조)

제 정 안
제13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특례시에 이양·위임되는 사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특례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024년 예산기준 특례시 재정현황>

(단위: %, 억원)

	창원	수원	고양	용인	유형평균
재정자립도	36	39	33	49	36.14
재정자주도	53.5	49.8	52.7	58.6	54.33
통합재정수지	△968	△2,537	△1,044	△1,637	-

*유형평균은 재정규모 및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임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100/일반회계 예산

*재정자주도=(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자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100)/일반회계 예산

*통합재정수지는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를 제외한 지자체의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임

특례시의 재정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계정 신설, 특례시 재산세율 인상, 특례시 탄력세율 적용범위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음.²⁰⁾

다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²¹⁾에 있으며,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계정은 개별 특별법에 따라 설립²²⁾되어 광범

20)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1914호, 2022. 1. 4.

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한 자치권한이 부여된 특별자치시·도²³⁾인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하여 설치되어 있고, 강원·전북특별자치도 및 다른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별도 계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부 계정별 예산편성 사업>

구분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시·도 자율편성사업	-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
	시·군·구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중앙정부 직접편성		-	부처직접 편성사업	부처직접 편성사업	부처직접 편성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부 계정별 규모>

(단위: 조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역자율계정	5.5	2.3	2.5	2.3	2.4
지역지원계정	4.8	6.6	7.5	8.2	9.0
제주계정	0.3	0.1	0.1	0.1	0.1
세종계정	0.1	0.1	0.1	0.1	0.1
합 계	10.7	9.2	10.3	10.9	11.7

23)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체계상 특별자치시·도 설치를 통해 국가기능 이양 등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도 계정을 운영 중이며, 예산 운용 측면에서 별도의 계정을 신설할 실익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특례부여 및 지원(안 제14조)

제 정 안
제14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특례시장은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특례시에 대한 특례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특례시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은 특례시장이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시에 대한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특례시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당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의 특례부여 요청 절차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참고 입법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2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강원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강원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4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전북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특례 부여 요청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 여부에 따라 특례 부여가 결정되는 시·군’에게 인정되는 것인데 비해,

<참고 규정>

「지방자치법」

-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2. 실질적인 행정수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
|---|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독자적으로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특례시’에게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특례 부여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해당 절차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34

[참고1]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4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1.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경상남도 창원시만 시범 실시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6.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7.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8.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참고2]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3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2조, 제66조, 제69조, 제83조, 제99조, 제100조 및 제111조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검사, 측량업 등록 관리, 측량업자 지위승계 관리,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관리, 측량업 등록취소, 토지지번경정 승인, 지적공부 반출 승인, 축적변경 승인, 측량업자·지적측량수행자·성능검사대행업자의 보고·조사, 등록취소 시 청문과 과태료 부과·징수
2.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자격 취소, 주택관리업자 교육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2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2, 제48조, 제52조의2, 제88조, 제90조, 제91조 및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용도지역의 지정·변경, 용도지구의 지정·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의 결정,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인가, 실시계획 관계 서류 공람과 실시계획 고시, 공사완료 등 공고
4.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제44조에 따른 법률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 휘발성유기화합물 신고·변경신고 접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5. 「도시개발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50조, 제51조, 제56조, 제58조, 제66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도시개발구역 분할·결합, 도시개발계획 수립·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조합설립 인가, 실시계획 작성·인가, 실시계획 고시, 도시개발사업 공사 감리를 할 자에 대한 지정 및 지도·감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 준공검사 및 공사 완료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협의,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통지 및 가산금 징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관리청의 의견청취와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기준 완화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5조, 제17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 시범실시 지

- 정요청,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 관한 조례 제정, 도시공원 결정 실효 고시와 취락지구 지정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조, 제11조 및 제142조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 규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확정·고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와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8.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2조, 제13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토지 등 분할거래 기준일 결정·고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9. 「물환경보전법」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제19조, 제19조의3, 제32조 및 제67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 및 수질관리조사, 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및 결정·고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보고, 수생태계현황 조사 계획 수립,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 변경과 휴경 등 권고,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 법률상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과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제22조 및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등록증 발급, 변경등록, 등록사실 통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폐관신고 및 등록취소, 시정요구 및 정관명령, 등록취소 및 등록증 수납, 운영 현황 및 등록취소사항 보고, 설립 계획 승인취소 및 등록취소·정관명령 시 청문과 중요사항의 자문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18조의4 및 제26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요청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현황 및 운영 상황 제출요청
 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빈집정비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조례 제정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 수립의견 제출, 일반산업단지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과 농공단지 지정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33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지역진흥산업계획의 수립,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농공단지 개발토지 등의 분양·임대 승인과 농공단지 공동부담금 징수 승인
 15.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법령상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

된 배출허용기준 설정

16. 「악취방지법」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의2, 제16조의7, 제17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발생실태조사, 악취관리지역 지정, 법률상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접수,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악취 개선명령 및 개선명령 위반 시 조업정지·과징금처분,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 개선권고, 권고사항 불이행 시 조치명령,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생활악취 방지대책 수립·시행,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검사 요구, 악취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장의 협조요청, 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시 청문과 과태료 부과·징수
17. 「어촌·어항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방어항 지정 및 지정협의, 지방어항 지정·변경·해제 시 의견청취와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18. 「온천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보양온천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수립
19.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20. 「주택법」 제15조 및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고시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 승인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22.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관리와 과태료 부과·징수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4조의2, 제7조, 제29조, 제39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제출, 시 종합계획 수립,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지적재조사사업 보고·감독과 과태료 부과·징수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의4,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에 따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빛공해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해당사실 통보,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 지원, 사후관리,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시 청문과 과태료 부과·징수
25.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참고3] 제정안 제10조(사무특례)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명	부처의견
제2호 건축물 허가	경상남도	- 51층 이상 건축물 및 연면적 합계 2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u>교통·인구·환경에 미치는 광역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부적절함</u>
제15호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의 수립·변경 및 30만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토부	- <u>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안권자(기초)-결정권자(광역)를 분리함이 타당</u> 하므로 부적절함
	경상남도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수립 및 해제 업무는 <u>광역계획권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u> 가 있으므로 부적절함
제18호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운영 등 업무	보건복지부	- 해당 위원회는 도지사가 수립한 도 단위의 지역별·기능별·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계획 등에 대해 <u>심의</u> 하므로 <u>도지사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u> 하여 부적절함
제19호 감정평가법인 추천업무	국토교통부	- 특례시가 <u>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는 경우 불공정성 우려</u> 가 있어 부적절함
	경상남도	- 특례시가 담당하는 경우 <u>토지등소유자의 신뢰성 저하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불공정성 우려</u> 가 있어 부적절함
제21호 임대주택의 우선인수·공급 등 업무	경상남도	- 현재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도지사가 <u>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인수권한 또한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u> 하여 부적절함
제26호 지역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업무	경상남도	- 지역물류정책 수립은 <u>관할 시·군·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립할 사항</u> 으로 <u>도지사 권한 유지가 타당</u> 하며, 제정안은 부적절함

	국토교통부	- 시·도지사가 <u>광역단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물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u>하며, 인접 지자체 간 <u>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가 조정 역할</u>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부적절함
제38조 발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등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사업은 <u>국가 전체와 연관되어 있고, 국가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u>이므로 개별 특례시 단위에서 담당하기에는 부적절함
제39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경상남도	- 산업위기는 <u>인근 지자체에 대한 연관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광역적 단위에서 대응하는 것이 타당</u>하므로 부적절함
제40호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수립·협의 업무	해양수산부	-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수립은 <u>광역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u>하므로 부적절함
제41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요청업무	국토교통부	- 정책일관성, 지역간 형평성, 업무혼란 방지 등을 고려하여 <u>지구지정요청 주체를 발전종합계획의 입안권자인 시·도지사</u>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적절함
제42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산업 선정	경상남도	-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산업 선정을 특례시에서 담당하는 경우 <u>지역 산업간 연계 부족으로 균형발전 저해 가능성</u>이 있으므로 부적절함
제43호 광역교통시행계획 ·추진계획 수립 등 업무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시설은 <u>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시설</u>이므로 도지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여 부적절함
제44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운영 등 업무	경상남도	- 특례시가 사업시행자·승인권자인 경우, <u>특례시가 자체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므로, 불공정성 우려</u>가 있어 부적절함

	국토부	- 사업시행자인 <u>특레시가 스스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불공정성 우려</u> 가 있어 부적절함
제45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설치·운영 등	경상남도	- <u>교육기관의 난립 우려</u> 가 있으며, 교육훈련기관은 <u>광역 단위에서 통합운영이 가능</u> 하므로 제정안은 부적절함
	행안부	- 시·도별 비전 공유의 필요성·교육시설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과 같이 <u>별도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함</u>
제46호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추진 등 업무	중소벤처기업부	- 특레시에서 도와 다른 지역중소기업육성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u>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적절함</u>
제47호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등 업무	경상남도	- 특레시가 독자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u>지역 간 균형발전이 훼손될 우려</u> 가 있어 부적절함
제52호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자에 대한 면허 등 업무	국토교통부	- 시·도의 대중교통 상황을 종합적으로 <u>고려</u>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u>면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체를 현행대로 유지</u>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적절함
제55호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운영	경상남도	- 소규모매립에 관한 심의를 주요안건으로 하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특레시가 구성하도록 하는 경우 <u>무분별한 매립의 난립 가능성</u> 이 있어 부적절함